

2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

가.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(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관련 규정 정비)

2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*

가.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(2026/6/30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「상법」개정(2026.3.6. 시행)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

- 모든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년 내 원칙적으로 소각하고,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의 발행 등이 불가함에 따라 자기주식을 규율하고 있는 법체계 간 정합성을 제고

2) 주요 내용

□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사업 · 반기보고서 첨부서류로 추가(제4-3조 제4항 및 제9항)

- 개정 「상법」에 따라 모든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, 주주총회 승인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첨부하여 일반주주 및 투자자가 관련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
- 이에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첨부서류로 추가

□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· 처분 관련 규정 개정(제5-2조)

- 개정 「상법」에 따라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의 처분이 불가
- 이에 따라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사회결의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

□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관련 규정 정비(제5-9조 제1항 및 제3항)

- 개정 「상법」에 따라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이 불가
- 이에 따라 교환사채 발행 관련 규정 삭제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고시 및 보도자료,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□ 자기주식 장내 처분 관련 규정 정비(제5-9조 제5항, 제6항 및 제7항)

- 개정 「상법」에 따라 자기주식을 주주균등처분, 제3자 처분 이외에 시장에 처분하는 방식이 불가
- 이에 따라 자기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처분할 때 주문방법 등 세부규정을 삭제하되, 시간외대량매매의 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 등 처분상대방이 특정되는 경우의 주문방법 등 세부규정은 유지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